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0. 12. 14(화)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나. 제출일자 : 2010년 11월 12일
- 다. 회부일자 : 2010년 11월 19일
- 라. 상정일자 : 2010년 12월 6일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윤영현)

가. 제안이유

-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과 그 등급 구분”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2008. 9. 10.)됨에 따라
- 현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과 그 등급을 규정하고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 구분표 삭제(제2조)
 - 의사인 의무직렬공무원(전임계약직 포함)에게 지급
 - ▣ 92. 11. 20. 개정이후 현재까지 지급대상자(정·현원) 없음
-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삭제(제3조)
 -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
 - ▣ 94. 2. 18. 신설이후 현재까지 지급대상자 없음
- 특수지근무수당지급 대상지역과 그 등급을 규정(안 제2조)
 -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백운면 덕동리,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별표)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장용대)

이번에 전부개정하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2008. 9. 10.)됨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과 그 등급 구분”을 규정하고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 구분표를 삭제(제2조)하고
-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를 삭제(제3조)하고
- 안 제2조에서 특수지근무수당지급 대상지역과 그 등급을 규정함에 있어 별표를 수정하였음.

금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2008. 9. 10.)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과 그 등급 구분”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08년 9월 10일에 개정되었음에도 2년이 지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지근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지역 및 등급은 별표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등급(제2조 관련)

구분	시·군별	지역 및 등급			
		특 지	갑 지	을 지	병 지
벽지 지역	제천시			백운면 덕동리	한수면 송계리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관 계 법 령 발 체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1981호, 2010. 1. 7, 일부개정]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등급구분에 따라 특지는 월 6만원, 갑지는 월 5만원, 을지는 월 4만원, 병지는 월 3만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85.9.9, 1993.1.15, 1995.1.28, 2000.1.28, 2001.1.29, 2004.5.4, 2005.1.7>

② 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0]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당해 기관의 특수성 및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별표 10]의 등급구분 기준표의 적용요령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1985.9.9, 1998.6.1, 2000.1.28, 2008.2.29, 2008.9.10>

[별표 10] <개정 2009.3.31>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제12조제2항관련)

1. 벽지지역

등 급 구 분 요 소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지역등급별 배점기준
가. 당해 기관에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까지의 거리	20km 이상 30km 미만	30km 이상 40km 미만	40km 이상 50km 미만	50km 이상 60km 미만	60km 이상	- 특지 : 39점 이상 - 갑지 : 31점 이상 38점 이하 - 을지 : 23점 이상
나. 당해 기관에서 가장 가까운 역·시외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4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12km 미만	12km 이상 16km 미만	16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다. 당해 기관과 나호의 역 또는 시외버스 정류장 사이의 1일 대중교통운행횟수(시내버스 등의 상·하행 운행횟수의 합)	17회 이상 20회 이하	13회 이상 16회 이하	9회 이상 12회 이하	5회 이상 8회 이하	4회 이하	30점 이하 - 병지 : 15점 이상 22점 이하
라. 당해 동 또는 리의 도로 면적 비율	1.5% 이상 2% 미만	1.0% 이상 1.5% 미만	0.5% 이상 1% 미만	0.5% 미만		
마. 당해 동 또는 리의 산지면적 비율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바. 당해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병 의원까지의 거리	20km 이상 30km 미만	30km 이상 40km 미만	40km 이상 50km 미만	50km 이상 60km 미만	60km 이상	
사. 당해 기관으로부터 일용품(접화·식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슈퍼마켓(소규모 가게 상점 포함)까지의 거리	1km 이상 2km 미만	2km 이상 4km 미만	4km 이상 6km 미만	6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아. 당해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이 피용 시설 또는 대중목욕탕까지의 거리	4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12km 미만	12km 이상 16km 미만	16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자. 당해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금융기관까지의 거리	4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12km 미만	12km 이상 16km 미만	16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차. 당해 동 또는 리의 상주 인구수	200인 이상 300인 미만	100인 이상 200인 미만	50인 이상 100인 미만	50인 미만		
카. 당해 동 또는 리의 차량 보급률	30% 이상 40% 미만	20% 이상 30% 미만	10% 이상 20% 미만	10% 미만		
타. 당해 기관의 직원수	5인 이상 10인 이하	3인 이상 4인 이하	2인	1인		
파. 당해 기관으로부터 8km 이내에 학교가 있는지의 여부	중학교 및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의 분교가 있는 경우	학교가 없는 경우		

비 고

1. 탄광지역(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폐광지역을 포함한다)은 최소한 병지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폐광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법률의 적용시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2. 같은 동 또는 리에 소재하는 기관은 동일한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1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연구직공무원은 별표 9의 제3호 및 제7호의 수당에 한정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1987.12.31, 1992.1.24, 2010.1.7>

[별표 9] <개정 2010.1.7>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관련)

기술 분야	2. 의료 업무등의 수당	가. 의무·약무·간호직 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의무·약무·간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와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승선·근무하는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직렬공무원 및 병원선 승선 근무자 : <u>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u> · 약무직렬공무원: 월 70,000원 · 간호직렬공무원: 월 50,000원
특수 행정 분야	7. 장려 수당	<p>라.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p> <p>마. 화장장· 화장장관리사무소 등 시체화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p> <p>바. 공원묘지·납골시설 등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p>	<p><u>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u></p>

□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령 제419호, 2008. 1. 4,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 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 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8.7.12, 1980.4.25, 1983.1.26, 2001.1.20>

제2조 (대상지역·대상기관 및 등급별구분) ①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을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1983.1.26>
②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할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을 별표 2와 같이 한다

[별표 1] <개정 2008.1.4>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등급 구분표(제2조제1항관련)

1. 벽지지역

시도	시·군·구별	지역 및 등급			
		특 지	갑 지	을 지	병 지
충청 북도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백운면 덕동리	
	보은군				회남면 거교리
	영동군			용화면 조동리	용화면 용화리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단양군			어상천면 대전리	적성면 하리, 어상천면 임현리, 영춘면 별방리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 11. 20)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2. 11. 20)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 과 같다. (신 설 94. 2. 18)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사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업무등의 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을 지급한다.

부칙(1992. 11. 20 조례 제2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2. 18 조례 제2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개정된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92. 11. 20>

일반직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구분표

(월지급액, 단위 : 원)

지역등급	전문의	일반의
갑지	월 609,000	월 518,000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사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개정 92. 11. 20>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년수별	1 등 급	2 등 급
	5년 이상	월 1,012,000이하
4년 이상	월 1,006,000이하	월 667,000이하
3년 이상	월 1,000,000이하	월 661,000이하
2년 이상	월 995,000이하	월 656,000이하
1년 이상	월 989,000이하	월 650,000이하

비고 : 근무년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신설 94. 2. 18>

장려수당지급구분표

수당지급대상	지급액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월 180,000원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월 150,000원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월 120,000원